

2020년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관련 위반 업소 처리계획

1. 미신고·미등록업소

- 사진촬영, 확인서 징구 등 증거확보하여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하고, 미이행시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

2. 위법업소(등록·신고 업소)

- 영업신고/등록된 업소에서 불법 증축 등을 통해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, 영업신고/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하고 있음이 적발될 경우에는 우선 계도 및 시정명령하고, 미이행시 영업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

3. 자진신고업소

- 영업신고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 요건을 맞추어 영업신고 수리되도록 안내 및 면책처리
- 영업신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자진폐업 안내 및 면책처리
- 자진신고 취지를 악용하여 자진신고를 가장한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처리

- 붙임 1. 참조 법령 1부.
2. 무신고 불법 영업 사례 1부. 끝.

관련 법규	위 반사 항	조 치사 항
공중위생관리법	숙박업종 미신고 영업	○ 행정지도 -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권고 ○ 행정처분 - (1차)영업소 폐쇄 (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) ○ 형사고발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)
	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	○ 행정처분 - 영업장 폐쇄명령 (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)
관광진흥법	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(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면적기준 초과,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, 단독 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및 소화기 미구비 등)	○ 행정처분 - (1차)시정명령 / (2차)사업정지 15일 / (3차)사업정지 1월 / (4차)취소 (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)
	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(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영업, 등록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,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)	○ 행정처분 - (1차)사업정지 1월 / (2차)사업정지 2월 / (3차)사업정지 3월 / (4차)취소 (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)
농어촌정비법	규모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(면적기준 초과,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영업)	○ 행정처분 - (1차)시정명령 / (2차)사업정지 15일 / (3차)사업정지 1월 / (4차)사업장 폐쇄 (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)

□ 관련 판례

구 분	주요 내용
서울중앙지법 2015.9.18. 선고	○ 사건개요-공중위생관리법 위반 - 피고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. - 피고는 신고하지 않고 2015. 4. 11.경부터 2015. 5. 15.까지 오피스텔에 침대, 인터넷, 소파 등 추가로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 ‘에어비앤비’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숙하게 하고 1박에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음. ○ 판결 내용-벌금 70만원 - 근거 1: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음. - 근거 2: 신고 없이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을 영위함
부산지법 2015.8.26 선고	○ 사건개요-공중위생관리법 위반 - 피고는 2015. 2. 7.경 부산 해운대구에서, ‘000집’이란 상호로 약 84,78㎡의 면적에 객실 3개, 거실, 식탁, 화장실, tv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(airbnb)를 통해 숙박을 제공함. - 1박2일 숙박료 200,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, 2014. 7.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1일 평균 200,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. ○ 판결 내용-벌금 70만원 - 근거 1: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음. - 근거 2: 신고 없이 1일 평균 20여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함.
대법원 2015도3674	○ 사건개요-공중위생관리법 위반 - 피고는 2013년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,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 - 피고는 자신은 이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, 숙박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 ○ 판결 내용-벌금 50만원 - 근거 1: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·군·구에 신고를 하여야 함. 다만,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동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됨 - 근거 2: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므로,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해당되며,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에서 제외됨 - 근거 3: 따라서, 피고인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

	숙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위 게스트 하우스를 관할 관청에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위생 관리법이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, 피고인이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됨.
서울중앙지법 2016고정3101	○ 사건개요-공중위생관리법 위반 - 피고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, 숙박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객실을 빌려주는 영업을 함. 이 객실에는 침대, 옷장, TV,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었음 - 피고는 자신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만큼, 자신이 한 영업은 숙박업이 아니고 부동산 단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 ○ 판결 내용-벌금 200만원 - 근거 1: 현행법상 숙박업은 ‘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’을 뜻함 - 근거 2: 피고가 객실에 침대와 옷장 등을 설치한 점,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숙박시설로 광고를 한 점, 입주계약서상 흡연 시 강제퇴실을 경고한 점, 5일 이상 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된다고 공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영업을 숙박업으로 봄 - 근거 3: 피고의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며,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움